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이 준공(2016.5.16)됨에 따라 늘어난 신규 장사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일부 모호하고 복잡한 조문을 간소화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나. 또한 현행 조례의 일부조항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
- 나. 봉안시설 명칭에 신규 장사시설인 평온당과 봉안담을 추가함(안 제5조 별표1)
- 다.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봉안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목으로 나누어 간단하게 규정함(안 제6조제1항)
- 라. 신규 봉안시설 운용에 필요한 봉안담 부부용 사용료를 규정함(안 제8조 별표2)
- 마.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항의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하여 조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표로 정비함(안 제9조제1항)
- 바. 자연장지 내 표지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 21조의3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22, 팩스 032-440-8764, 이메일 jbkim8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봉안시설

가. 관내주민. 다만, 부부용 안치단에 대하여는 한쪽의 배우자가 관외주민일 경우에도 안치 가능

나.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합골하는 다른 배우자

다.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라.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마. 시 관할 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 등에 따라 발생한 연고자가 없는 유골(이하“무연고 유골”이라 한다)

바. 관외주민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망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의3 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같은 항 제4호로 하

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자연장지 내에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의 봉안시설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류	명 칭	위 치	비 고
봉 안 시 설	· 인천가족공원 추모의 집 · 인천가족공원 금마총 ·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부속 봉안당 · 인천가족공원 만월당 · 인천가족공원 가족봉안묘 · 인천가족공원 평온당 · 인천가족공원 봉안담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가족공원 내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조 (군수 및 구청장의 책무) 군수 및 구청장은 묘지 증가의 억제와 화장 · 봉안 · 자연장의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 <u>1. 개인 · 가족 · 종중 (문중)묘지의 신설을 억제하면서 화장 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2. 장사문화의 확산과 주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 홍보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u> <u>3. 분묘규모의 최소화(10제곱미터이하) 및 평장을 유도하여야 한다.</u> <u>4. 묘지부족난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 중장기 묘지 등(공설묘지 · 화장 시설 ·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내 비조성묘지를 재개발 또는 재정비</u>	<u><삭 제></u>

하여 장사시설 등의 안정적인
공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5. 장사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
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인부(상용인부)를 두고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
다.

제6조 (사용자의 자격 등) ① 장사
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안시설 : 관내주민,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합골하는 다
른 배우자,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및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또는 시 관할 구
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 등에
따라 발생한 연고자가 없는
유골(이하 "무연고 유골"이라
한다). 다만, 부부용 안치단에
대하여는 한쪽의 배우자가 관
외주민일 경우에도 안치가 가
능하며,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자의 자격 등) ① ---

-----.

1. 봉안시설

가. 관내주민. 다만, 부부용
안치단에 대하여는 한쪽의
배우자가 관외주민일 경우
에도 안치 가능

나.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합골하는 다른 배우자

다.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
주귀국동포 사망자

라.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
에서 개장한 유골

마. 시 관할 구역 안에서 도시
계획사업 등에 따라 발생
한 연고자가 없는 유골(이
하"무연고 유골"이라 한
다)

2. ~ 5. (생 략)

② · ③ (생 략)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관내 주민에 대한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감면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화장시설 전액 면제(관외주민 포함), 그 밖의 장사시설 50퍼센트 감면(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 · 공헌자로서 국가 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유공자증을 받은 본인(유족 등 가족은 제외) 및

바. 관외주민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망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 · 공헌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3과 같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
자: 화장시설 전액 면제, 그 밖
의 장사시설 50퍼센트 감면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관외
주민 포함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
2조에 따른 사망자(관외주민
포함),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중 무연고 사망자(관외주민
포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중
무연 고자, 그 밖의 재난 등으
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
고 시장이 인정한 자 : 장사시
설 전액 면제(다만, 사용기간
연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및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
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다
만, 보상분묘는 제외한다.)

가. 화장시설 : 면제

나. 봉안시설 : 최초 10년 면
제

다. 자연장지 : 50퍼센트 감면

5. 인천가족공원 안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부부합골 안

치하는 경우 : 1기만 징수

6.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화장시설 사용료 50퍼센트 감

면

7.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관내주민과 관내 의·과학대

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화장시설 전액 면제

8. 사망일 기준 만90세 이상자

로 화장시설 및 자연장지를

사용하는 경우 전액면제(사용

기간 연장은 제외) <이동 201

5-01-12>

② (생 략)

제21조의3(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개인 식별용 명패의 설치

허용하지 않으며 시장이 설치

한 합동 개인 표식 표찰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자연장의 방법) ①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u>5.</u> (생 략) ② · ③ (생 략) <u><신 설></u>	<u>4.</u>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u>④ 자연장지 내에서는 규칙이</u> <u>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설치</u> <u>할 수 있다.</u>
---	--

[별표 2]

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료 (제8조 관련)

1. 화장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 사용료 및 관리료

구 분			기 준	관내주민	관외주민	비 고	
화장 시설	만15세 이상		1구당	160,000원	1,000,000원		
	만15세 미만			130,000원	400,000원		
	개장유골			100,000원	400,000원		
	죽은태아(4개월 이상)			50,000원	300,000원		
봉안 시설	봉 안 당	1 인 용	1기당	사용료	250,000원	600,000원	10년 단위로 징수
				재사용료	350,000원	700,000원	
				관리료	10,000원/1년	20,000원/1년	
				연장기간	10년(최초) 10년2회	10년(최초) 10년2회	
		부 부 용	1기당	사용료	500,000원	800,000원	
				재사용료	700,000원	1,000,000원	
				관리료	10,000원/1년	20,000원/1년	
				연장기간	10년(최초) 10년2회	10년(최초) 10년2회	
	봉 안 담	1 인 용	1기당	사용료	150,000원	400,000원	
				재사용료	200,000원	600,000원	
				관리료	10,000원/1년	10,000원/1년	
				연장기간	10년(최초) 10년2회	10년(최초) 10년2회	
		부 부 용	1기당	사용료	300,000원		
				재사용료	400,000원		
				관리료	10,000원/1년		
				연장기간	10년(최초) 10년2회		
	무연고		1기당	사용료	150,000원	-	무연고실 안치
자연 장지	수목장립 및 자연장	1기당	사용료	600,000원	-	30년 단위로 징수 (30 년 1회 한함)	
			관리료	10,000원/1년	-		
			연장기간	30년(최초) 연장없음	-		
	정원식 수목장	1기당	사용료	1,000,000원	-		
			관리료	10,000원/1년	-		
			연장기간	30년(최초) 연장없음	-		
유택 동산	산골	1기당	사용료	10,000원	50,000원		

비고 : ① 관내 군부대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경찰을 포함한다):

화장시설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② 관외 거주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동포 사망자: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③ 죽은 태아는 부모의 주소로 제2조제11호 적용

④ 개장유골은 분묘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

⑤ 봉안시설 부부용 안치단의 경우 부부유골 한쌍을 1기로 적용하
고, 배우자가 관외주민일 경우에도 관내주민 사용료 적용

2. 비조성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기준면적	기 본 금 액			4.95㎡ 초과사용료
	계	사용료	관리료	
4.95㎡	21,400원	3,600원	17,800원	3.3㎡당(1,200원)

3.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 관리료

구 분	기준면적	관리료	비 고
계단식 일반조성묘	4.95㎡	30,000원/1년	10년 단위로 징수
가족봉안묘	8.26㎡	50,000원/1년	10년 단위로 징수

4. 인천가족공원 장사문화홍보관 부속시설 사용료

구 분	시 설 명	면적[㎡]	기 준	사용료	냉·난방비	비고
장사문화 홍 보 관	영상회의실	151.2㎡	1회 (1시간)	10,000원	15,000원	

[별표 3]

사용료 감면 기준(제9조 관련)

1. 장사시설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사용료 전액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망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자 중 무연고자	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 고 시장이 인정한 자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2. 화장시설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사용료 전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 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관내주민
50퍼센트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관내주민

3. 화장시설을 제외한 장사시설

감면 금액	대 상	범 위
50퍼센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관내주민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관내주민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사용기간 연장은 감면 제외

4.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및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보상분묘는 제외)

가. 화장시설 : 면제

나. 봉안시설 : 최초 10년 면제

다. 자연장지 : 50퍼센트 감면

5. 인천가족공원 안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부부합골 안치하는 경우: 1기만 징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사문화홍보관에 부속된 시설물의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 감면

(별표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2조(조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 바. (생략)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

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별표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조례안의 발의에 따라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
소액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장 이기관